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철도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91호, 2023.4.18. 공포, 2023.10.19. 시행)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,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(안 제 17조)

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, 평가 항목,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(안 제 17조의2)

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, 실시협약,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,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00.~ 6. 00.)

3) 행정규제 : ○ ○ ○ ○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(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1. 철도의 안전성
2. 이용자의 편의성
3.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,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
2. 국가철도공단 직원
3.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직원
4.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

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2(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)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·평가,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4.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
5.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

6.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·조정에 대한 지원
7.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(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(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</u> <u>1. 철도의 안전성</u> <u>2. 이용자의 편의성</u> <u>3.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,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</u> <u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</u>

<신 설>

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
의 공무원 또는 직원

2. 국가철도공단의 직원

3.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직
원

4.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

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
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의
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자에게
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
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
받은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
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
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
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
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2(민자철도 관리지원센
터의 업무) 법 제25조의5제2항
제6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

업무를 말한다.
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 제7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·평가,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4.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
5.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
6.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·조정에 대한 지원
7.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